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거지 *

| 일 시 2010년 2월 18일(목) 오후 2시 |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반차별공동행동

http://chachacha.jinbo.net

✓ 차례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

차별에 대한 말하기, 그 불/가능성에 대하여

- 차별담론팀의 활동 속에서 당면하게 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수연 (반차별공동행동/차별담론팀)

반차별공동행동이 고민하는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 '입장'이기보다 '고민'일 때 함께 하는 것이 더 빛난다는 믿음으로

박석진 (반차별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2부 우리는 서로 어디에 와 있는거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이후 고민들

배복주 (반차별공동행동/장애여성공감)

성·인종차별반대 공동행동: 취지와 활동 지향

이대훈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반차별 운동은 실천과 연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잘해보자는 거지

신기루 (반차별공동행동/한국여성민우회)

3부 전체토론 - 다함께 차차차

차별에 대한 말하기, 그 불/가능성에 대하여¹⁾ - 차별담론팀의 활동 속에서 당면하게 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 수연 (반차별공동행동/차별담론팀)

1.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안)이 만들어진 모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는 참여정부의 12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던 '차별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다양한 차별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화 과정으로서, 차별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그룹들의 입장이 경합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 즉,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은 구체적인 차별 영역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차별인가', '차별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논점을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차별금지법이다양한 차별의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와 의미 구성 과정의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과정으로부터 기인하는 긴장들 속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준다. 2)

그러나 차별이 구성되는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차별 사유를 열거하는 것으로 차별금지법이 구성될 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은 특정한 차별 문제의 중요성과 우선성을 따지는 논쟁으로 수렴되기 쉽다. '차별 예시 조항의 나열이 포함과 배제의 원리 속에서 있을 때, 다양성의 요구는 탈정치화되고, 권력 관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언젠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포함될 것이지만, 아직은 어렵다는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권김현영, 2007, "차별금지법과 사회적연대의 가능성",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 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 즉, '고용형태'혹은,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둘러싼 경합의 과정을 "등"이라

¹⁾ 이 글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본 '성차별'의 의미와 '여성' 범주에 관한 연구'(최수연, 2009)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재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²⁾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의 초기 논의 과정에서는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의 포함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였다. 이는 당시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가 되었던 시점이며, 이에 대해 여성운동 진영 또한 여성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고용형태'의 포함을 강하게 주장했었기 때문이다(법무부 인권국, 2007,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그러나 2007년 10월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 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고용형태'가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되었으며, 차별시정을 위한 권고 조치가 한층 약화되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 되면서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2월 법무부는 성적지향을 비롯한 출신국가,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등 7가지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는 문구의 삽입으로 봉합하는 법무부의 입장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후퇴시키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지향하는 급진적 인권의 가치는 '더 많은' 차별 사유들이 열거되는 것으로 담보되기 어렵다. 차별의 의미가 구체화와 열거를 통해 제시될 때, 각각의 차별 영역들은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주장과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차별이 구성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과정에 주목하지 않은 채로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작동시키는 것은, 늘 새로운 차별 영역의 등장 속에서 그 목적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조건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차별을 말할 때 부딪치는 곤경 : 추상과 구체 사이

따라서 누가, 얼마나 차별받았는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차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맥락을 고려한 질문들 또한 제기되어야 한다. 차별 예시 조항에 '진열된' 차별 영역들 간의 명확한 분리와는 달리, 현실에서의 차별 피해들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효과로 구성된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차별 예시 조항이 구성되는 방식의 원리는 무엇인가', '각 각의 범주들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법 제도를 통해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물음들은 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킨다.

그러나 그간의 차별 관련 담론들은 차별금지법을 이러한 물음들과 연관되어 다루지 않고 있다. 즉, 그간의 차별 관련 법, 정책 담론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많으며, 이는 기존의 차별담론이 법 제정의 과정과 그것의 효과를 염두에 둔 '실용적인'(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용적일 수 없는') 접근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

이러한 접근 속에서, 차별의 내용은 차별의 추상적 차원을 다루는 '총론'과 그 '세부 항목'으로서 구체화된 차별 영역의 경험들이 나열되는 형식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많다. 그러나 차별의 문제를 추상과 구체의 문제로 이원화하여 다루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차별을 추상적인 문제로 다룸으로써 차별 피해의 경험은 현실의 구체적인 삶으로부터 괴리되기 쉬우며, 차별을 구체적인 경험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 차별이 구성되는 맥락의 복합성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별담론팀은 차별을 추상적/구체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경계심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나아가 차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언어나 문제틀을 고민하기고자 하였다. 이제와 돌이켜 보건데, 우리의 호기로운 계획은 반차별 공동행동이 다양한 정체성 정치학의 지형 속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되어 연대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³⁾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 담론에서는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거를 헌법에 서부터 찾고는 있으나, 평등 또는 차별금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헌법의 '해석'에 위임하고 있다(송석윤, 2004 : 4, "차별의 개념과 법의 지배", 『사회적 차별과 법의지배』; 정강자, 2008 : 102,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소고", 「제 11차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성평등의이론과 실제IV」). 따라서 현실에서의 차별이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법 담론 안에서는 차별 개념이나 차별에 대한 사법 심사의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게 논의되며, 이는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들을 만들어낸다.

이에 반해 기존의 차별 관련 정책 연구들은 구체화된 형태로 차별의 영역들을 열거함으로써, 그에 따른 피해를 드러내고 사례들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정 집단의 피해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고, 피해의 심각성을 가시화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 사례를 통해 차별받는 존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드러내는 가시화 전략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피해 혹은 존재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에 대해 질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있는 경험과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혹은 기대를 반영한 활동이었다.

3. 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 질문에 대한 질문들

그러나 이참에 솔직히 고백하자면, 차별담론팀 역시 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다. 우리가 기존의 차별 담론들에 대해 문제의식, 불만, 아쉬움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의 내용과 범위, 그 한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 속에 있다.

우리의 활동이 국가 기관의 연구 보고서와는 무엇이 다른가/달라야 하는가?, 우리의 활동이 시민 사회 단체의 연대체 내 소규모 네트워크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가/어떻게 지속가능한 것이 될 것 인가?, 우리의 활동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움직임과 어떤 연관을 갖는가/갖지 않는가? 이처럼, 차별 담론팀이 놓여 있는 조건과 차별금지법이라는 구체적 현안 정세는 우리의 활동을 계속 붕 뜨게 했다.

또한, 차별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는 커다란 질문은 우리의 상상력에 무거운 추를 매달아 놓았다. 차별에 대한 기존 담론이 차별을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차원으로 분리하여 다루어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별점을 만들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커다란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대답할수 없는 질문을 만들어 내게 했다. 예를 들어 '차별의 (대안적)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참을 쩔쩔맸으며,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며 머물러 있었다. 이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라기보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될 수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특정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되는 차별 문제를 명료한 언어로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고, 우리가 만드는 질문들은 다시 처음의 문제의식과 부딪치거나 혹은 문제의식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차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차별담론팀의 활동의 성과가 차별에 대한 말하기의 하나의 대답이기보다,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던지는, 혹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 자체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지도 모른다. 그 질문들이 왜 대답할 수 없는 형태로 구성되는가? 그 질문들에 대답해야하는 것처럼 느끼는 '우리'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물음이면서, 차별에 대한 우리의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활동이 차별에 대한 매끈하고 명료한 대답이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시도가 비껴가는 많은 틈새들에서 또 다른 언어들이 늘 새롭게 제기될 것이며 우리는 그 것으로부터 새롭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질문에 대해 질문하면서, 동시에 연대의 경험에 주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4. 차별의 경계들과 연대의 정치 : 차별금지'법'을 고민하며

차별금지법이 권리 없는 사람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의 경계들을 고민하고 그 지점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시민사회의 활동들이 매우 중요해진다. 국가 권력이 차별의 피해를 구제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차별의 경계들을 생산할 때, 그 틈에서 차별의 사회적인 구성에 주목하고, 이를 정치적인 것의 차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은 시민사회의 역량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정체성의) 정치학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반차별공동행동, 무지개행동의 연대의 경험들이 차별의 의미와 평등을 향한 권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

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배 권력에 저항하는 정치적 힘이 당사자의 경험, 그 자체에 기인할 때, 정체성의 맥락적 구성은 가려지게 되고 차이는 주어진 것이 된다. 이는 다양한 집단들의 접점과 연대의 기획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거나 혹은 이해 집단 간의 잠정적 화해 상태로 머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다양한 차별 영역들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촉발한 고민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따라서 정체성의 정치학이 갖는 힘과 효과와 더불어, 그것들의 어긋남과 빈틈 속에서 반차별운동이 새롭게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4) 즉 정체성 정치가 만든 경계를 넘어 새롭게 모색되는 연대의 의미를 실험하는 과정이 바로 확장된 '차별'의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들 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들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차별운동은 '인권의 정치',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홍태영, 2009, "인권의 정치와 민주주의의 경계들", 「정치사상연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⁴⁾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속에서 구성된 '우리'의 경계 가 무너지고, '우리' 내부의 차이가 부각될 때 연대는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질문이 된다. 따라서 정체성의 차이들이 만드는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거나 구축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진영들이 모여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으로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반차별공동행동이 고민하는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 '입장'이기보다 '고민'일 때 함께 하는 것이 더 빛난다는 믿음으로

● 박석진 (반차별공동행동/인권운동사랑방)

1. 반차별공동행동이 해온 일

2007년 9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 후 7개 차별사유가 삭제되면서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 2007년 11월 반차별공동행동(준) 결성,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 차별금지법 토론회, 차별금지법안 국회 발의(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반차별 영화상영회 '다함께 차.차.차 (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진행, 그 외 각종 기자회견 진행.

2008년에도 이어 반차별공동행동(준)의 활동 지향에 대한 논의를 모든 참가단체들과 함께 릴레이 워크숍 개최. 이후 2008년 3월 반차별공동행동으로 조직 개편. 이후 반차별 상상더하기, 웹진〈차. 차.차〉발행을 기본 활동으로, 그 외 여러 특별/연대 활동 진행.

1) 반차별 상상더하기

- * 2008년
 - 반차별, 장애인권을 만나다(4월)
 -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전망(6월)
 - 피해/차별 어떻게 말할 것인가(8월)
 - 익숙한 이방인, 이주민씨 이야기(9월)
 - 에이즈의 긍정적 효과(11월)
- * 2009년 〈내부 상상더하기 3차〉
 - 1차; 반차별운동은 무엇을 욕망하는 운동인가 ('차별'은 무엇이고 '반차별'은 어떤 지향점을 갖는가)
 - 2차; 차별을 말할 때 피해를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차별을 말할 때 왜 피해를 말하게 되었나, '피해자화'에 대한 고민)
 - 3차; 차별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반차별운동의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보고 언어화해보자)
 - "성(性)스러운 하루" 우리 안의 성적 터부 드러내기(9월)

- 2) 웹진 〈차.차.차(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 발행
 - 별+별시선(기획기사), 반차별 용어사전, 반차별 생활백과, 댓글놀이, 반차공's 아나토미 등 꼭지 기사 발행
- 3) 특별/연대 활동
- * 2008년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 진행 : "여성, 체감온도 38℃로 후끈~"
 -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집회 참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캠페인 진행 : 차별에 반대하는 번개 "우르릉 꽝!"
 - 12.1 세계에이즈의날을 맞아 HIV/에이즈감염인 인권에 관한 선전전 및 거리캠페인
- * 2009년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행사 진행 : "여/성, 폭력을 이야기하는 101가지 방법"
 - 내부 미디어 워크숍 진행(5월)
 - 차별담론 개발 활동 중 : 반차별공동행동 내 네트워크 모임(차별담론팀)

2. '차별'에 대한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렵고 복잡하지만 필요한

반차별공동행동은 2008년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는 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고민의 과정 중 하나가 '입법운동의 경험을 통해 본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의 전망'이란 제목의 상상더하기였다. 당시 이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는 반차별공동행동 내에서 상당히 열띠게 토론되었다.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차별금지법도 더불어 함께 폐기된 상황에서 누구도 차별금지법을 당장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차별금지법 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이견들은 대략 몇 가지로 구분해볼수 있는데.

- 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당장의 제도적인 차별금지의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과 구제를 제도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견
- ② 당장의 차별금지법 제정보다는 차별금지법이라는 '대중적인' 화두를 통해 차별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자는 의견
- ③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합의를 만들어가 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
- ④ 차별금지가 법제화되는 순간 차별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보수화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운동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입장이 있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①, ② 의견을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으로 보는 시각과 ①, ②, ③ 모두 넓은 의미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이 역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이에는 \triangle 반차별운동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무엇을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쟁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쟁점으로만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상 위와 같은 의견의 스펙트럼은 별로 고려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그 토론 과정 속에서 "입법운동"은 하나의 합의된 말이기보다는 여전히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실은 그 토론이 옳고 그름에 대한 쟁점이기보다는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당시 논의 결과, 반차별공동행동은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입법운동 대신, 반차별 상상더하기와 웹진 발행을 통한 차별 담론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했다. 2007년과 2008년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을 하면서 반차별공동행동은 오히려 △ 차별이 무엇인지 △ '차별은 나쁘다'를 넘어 차별을 어떻게 설명할지 △ 현실에서 차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다.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차별에 대한 담론이나 사회적 합의 역시 턱없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또 여성, 장애, 성소수자, 이주민 등과 같이 주로 차별 사유별로 나뉘어 있는 반차별운동의 질서 속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통합적인 차별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어려움을 포함해 '차별은 이런이런 거야'라고 설명해내지 못하는 내공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이런 반차별운동의 상황에서 차별에 대한 고민을 법적 형식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더 어렵게 느껴졌다. 법은 우리의 고민과는 오히려 반대로, 안그래도 부족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의 의미를 제한하는 것을 통해 명확하게 하려 하고, 차별의 통합적인 양상(예를 들어, 여성이면서 비혼이고 비정규직인 현실)을 고민하기보다 차별 사유별로 더욱 선명히 구획함으로써 전형성을 확보하려는 속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의 통합성을 고민하기 위해 반차별 상상더하기를 통해 영역별로 나뉘어 있는 반차별운동 간의 횡단 대화를 모색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장애'와 '여성'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주'와 '성소수자'/'여성'은 또 어떻게 교차되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여러 터부/금기들은 어떻게 차별과 연결될까 등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맥락들을 들여다보았다. 이를 통해 차별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또 주체 안에서 어떻게 복잡한 차별의 양상들이 내재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현실에서 차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차별로 인식할지 등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반차별공동행동에 참여해온 단체들은 각각의 다른 기반 속에서 출발해 자신의 고민 속에서 차별 담론을 확장하고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인권운동은 여성운동을 만나(사실은둘 다 '인권운동'이지만)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며 기존 담론의 한계에 대해고민할 수 있었고, 여성운동은 장애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을 만나 '여성'의 범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질문할 수 있었다.

또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이라는 행위 혹은 결과에만 주목하지 않고, 차별을 만들어내는/차별이 구성되는 사회 구조, 사람들의 인식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건드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근저의 더 큰 무언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담론,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을 고민했다. 현상과 행위로서의 차별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차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꿈으로서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색깔에 대한 젠더화. 아는 사람의 아들은 현재 초등학생이다. 이 아이는 분홍색을 매우 좋아한다고 한다. 그런데 남자 아이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놀리고 못 살게 군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한 방식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이었다. 빨간색 역시 '여성적인 색'으로 인식되긴 하지만 분홍색의 거대한 아우라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나 보다. 남자가 분홍색을 좋아하면 이는 '남성'답지 못하기 때문에, 즉 '여성스럽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이를 차

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구획짓기는 끊임없이 '남성'과 '여성'의 규범들을 재생산하며 성별이 분법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모여 있을 경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분홍색 물결이 출렁거린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남자 아이가 당한 차별의 경우 '단지 남자가 분홍색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차별 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피해를 방지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 사람들이 '남자가 분홍색을 좋아한다니, 웃기는군. 하지만 이런 말은 차별적인 것이니 입 밖으로 꺼내면 안돼'라고 생각하며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차별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성별 규범에 의해 분홍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교육'된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차별'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진다. "남자도 분홍색을 좋아할 수 있다"거나 "남자가 분홍색을 좋아한다고 차별하면 안된다"는 말 혹은 조치만으로는 분홍색을 좋아하는(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여자 아이들이 당한 '차별'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담론을 말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수 없다. 말하자면 반차별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점을 차별의 범주 속에서 말하고 싶었다.

웹진 〈차.차.차〉는 이러한 고민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대로 발행한 것이다.

3.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없다?

운동의 성과가 제도화되고 이에 안주하는 순간 운동은 보수화되기 시작한다. 제도는 필연적으로 보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도는 당장의 차별을 중단시키고 차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가능성을 연다. 제도는 차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차별에 대한 담론을 주류적 관점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또다른 차별을 낳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제도를 견인하는 운동과 운동이 만들어내는 담론의 확장은 중요하다. 제도는 담론 형성의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제도가 우선이냐 담론이 우선이냐가아니라, 그 과정에서 운동이 얼마나 주도하고 개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 점에서 2007년 차별금지법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후을 남겼다.

2009년에는 더 많은 대중들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우리 안의 내공을 쌓고자 내부 상상더하기를 세 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차별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아직도 온전히 우리의 것이 없다. 여전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무수한 맥락들을 온전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담론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차별이 어떻게 주류 질서를 뒤집을 수 있는 전복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을까. 여러 반차별운동 속에서 차별을 다루는 담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나. 우리는 얼마나 서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 여전히 우리들의 상상을 더해야만 하는 것들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반차별운동은 끊임없이 소통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생각한다. 반차별공동행동이라는 조직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각자의 운동 속에서 성과들을 쌓아가고, 반차별공동행동을 통해 그런 성과들을 교류하며 서로의 반차별운동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상상더하기와 웹진 〈차.차.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제한적이나마 고민을 나누어보고자 했다. 이런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활동 속에서의 잦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운동과 문제의식의 맥락을 교류하고 이해하는 것도 반차별운동의 고민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큰도움이 되었다. 운동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더 많은 이야기(고민과 맥락, 철학 등에 더해 뒷담화까지!)를 나누고 이해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서로의 고민을 훨씬 더 깊

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이렇게 맥락이 삭제되지 않은 고민을 교류하는 지난한 과정이 연대와 대화를 즐겁게, 또 때론 치열하게(길기로 소문난 회의 시간), 그리고 더욱 깊숙이 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상상더하기와 웹진은 이러한 과정이자 결과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계속 해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었다. 상상더하기와 웹진을 논의하는 외중에도 '차별금지법'은 툭툭 튀어나왔다. 지난 해 보노짓 후세인 씨와 한국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사건 이후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던 국회의원도 있었다. 우리 사회는 그게 과연 인종차별인지에 대한 합의도 찾기 힘들어 보였다. 인종차별과 떨어질 수 없었던 성차별에 대해서는 아예 제대로 언급되지도 않았다. 과연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결합되었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누구도 설명하기 힘들어 했다. 반차별운동은 누군가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무턱대고 들이대던 상황 앞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지, 뭐라고 주장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 보였다. 또 올해부터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별로 고민하지도 못하고 있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앞에서 반차별공동행동은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또 한 편에서는 전혀인권과 차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립서비스를 해대고 있었다. 불행히도, 최근 법무부의 행보는 그게 립서비스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이명박 정부 기간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할 때 반차별공동행동은 뭐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난감한 질문들을 외면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미 그것은 현실이었으므로.

여전히 고민이 남는다. 반차별공동행동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은 넓은 의미로 보면,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더라도, 차별금지법 입법을 준비해온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은 느끼지만 지금까지 반차별공동행동이 고민해온 논의의 기반 위에서 비로소 차별금지법을 더 풍부히 고민할 수 있을 테니. 하지만 상황은 우리를 기다려주지만은 않는다. 차별금지법을 말해야 할때, 반차별공동행동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반차별운동을 고민하는 다른 운동들은 뭐라고 말할까. 차별금지법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등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차별운동이 얼마나 그 과정에서 개입하고 주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 혹은 준비를 하고 있나.

4. '차별금지'가 아닌, 즐거운 해방적 주체로서의 '소수자'

내가 알고 있는 인권운동을 하는 한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반면 그의 동료들은 특정 대학 출신들이 많고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친구에게 "너는 그 안에서 소수자"라고 했더니, 자신은 소수자가 아니라고 했다. 물론 그 역시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나는 소수자인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난 소수자가 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차별금지'는 주체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게 만든다. 차별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든 아니면 목격자이든,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금지하는 역할이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차별 상황이나 차별에 대한 피해로부터 주체를 분리하고 이로써 주체의 능동성은 고려되지 않는 맥락을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 "나는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지당하신 말씀) 차별 피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은 너무

나도 당연한 말이 된다.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은 반면, '내가 직접 성차별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훨씬 낫다고 한다. 실제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라는 설문조사 결과, 성차별에 대해 남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거나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5.9%나 되지만 내가 직접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1.2%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자신이 차별의 피해를 당했다고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후자는 자신의 존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은 때론 전혀 다른 과정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차별의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특정한 맥락에서 권력의 약자의 위치에 처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피해자'로서 정체화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약자'나 '피해자'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그렇게 호명되지도 않는다. 가급적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정체성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차별공동행동에서는 차별의 피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피해자화'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나누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이나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없이 차별의 목격자로서만 자신을 위치지우며 반차별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혹은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계몽주의적인 운동의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또 '피해자'나 '약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역시 이해할 만하지만, 정치적으로올바르지 않을뿐더러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게 만든다.(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혹시 우리 운동은 이 어디쯤 있지는 않았나. 결과적으로는 뻔한 말 같지만, 여전히 실천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느껴지므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우리 모두 '소수자'임을 즐겁게 인식하고 선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약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적 가치에 얽매여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불편하게 살지 않고 그런 가치들을 넘어서는 해방감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해낼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류적 가치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더 자유로운 해방감을 맛볼수 있는 존재로서의 소수자. 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이러한 해방감은 공유되고 확산되어야한다. 뻔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한 운동의 기획과 활동,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반차별공동행동에서도 이런 해방감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운 활동이었다. 모든 운동을 통해 누구라도 기꺼이 소수자가 될 수 있고 소수자라고 즐겁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1. 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우려를 짚어본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차별운동에 미칠 영향)

- □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우려
 -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만들 수 있고, 차별 문제가 공적 논의의 장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음.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합의 수준은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을 것)
 - 제도적으로 차별을 논의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음. 즉, 차별이 담론의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개인이나 집단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됨

- 차별이 담론의 영역과 제도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당장 생존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로 제도의 영역에서 차별(과 구제)이 다루어질 수 있음. 하지만 절 박함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따라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도의 영역에서 밀려날 수 있음.

하지만.

- 차별 담론 자체가 제도에 갇힐 우려가 있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차별의 개념이 오히려 좁 아지고 보수화될 우려도 있음
-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관념으로 법망에 포괄되지 않는, 혹은 법에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면죄부가 될 수 있음. (법이 있으니까~,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 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차별은 '차별'로 인식조차 되지 않거나 이를 통해 차별들 사이에 위계가 발생할 수 있음
- 2.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의미(와 우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입법운동과 반차별운동과의 관계)
 - ㅁ 차별금지법 입법 운동의 의미와 우려
 - 차별금지법 내용을 통해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높일 수 있는 논의를 제기할 수 있음(차별금지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 차별에 대한 추상적인 수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만들 수 있음. 차별의 의미, 범위 등(징벌적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여러 차별 사유들의 의미와 범위 등)
 -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의미 모두 고려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부각해 살려나갈 수 있음(필요도 있음)
 - 제도적 논의를 통해 차별 당사자들을 조직하기 수월해지는 점이 있음(처벌 및 구제 가능성)

하지만.

- '차별금지법 제정의 우려'에 대한 고민
- 현재의 역량 상 반차별운동이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으로만 집중하게 되면서 반차별운동이 제도 의 영역으로 한정되고 반차별의 담론이 확장되고 풍부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입법을 위한 대국회 활동이 지나치게 소모적인(소모적으로 느껴지는) 활동이 될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입법운동 과정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나가면서 입법운동을 추진하면 좋겠음. '차별금지법'이라는 계기를 통해 반차별운동을 하는 것과 당장의 국회 대응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전자에 가까움. 차별금지법을 화두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운동의 방향을잡으면 좋겠음. 우려에 대해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면서, 가능하다면 약간의 역할분담도 고려해볼만함.

- □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시 예상되는 어려움
 - 2007년과 마찬가지로,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발(차별 사유 중 '성적 지향'과 '출신국가'를 중심으로)
 - 이 외에도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쟁점이 대중화될수록 논쟁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임(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은 아직 국내법 상 도입되지 않은 개념.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관철하지 못한 내용임. 2007년 당시 법무부 발의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차별 사유 중에서도 출신국가, 언어, 전과 등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음. 쟁점에 따라 국가-시민사회, 보수-진보, 재계-사회운동 등과 같은 논쟁 구도 외에도 차별 사유 간 논쟁도 발생할 수있음.)
 - 각 영역에 따라 반차별운동의 역사와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반차별운동 간 논쟁과 차이가 부 각될 우려도…
 - '차별은 나쁘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구체적인 지점에 있어서는 무수한 쟁점들과 반발들이 있을 것. '차별의 수혜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인식하고 내어놓는 것까지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에 포함되겠지만, 이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이는 차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담론적 논의까지 포함할 수밖에 없음. 또한 이러한 논쟁이 반차별운동이 넘어서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됨.('착한 운동'을 넘어서자) '군가산점제 논쟁'을 떠올려 보자. 매우 어려운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음. ㅠㅠ
 - 반차별운동이 아직은 차별에 대한 풍부한 담론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음. 차별과 관련된 이 야기를 대중화할 수 있는 기획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좀 걱정.

반차별공동행동은 차별에 대해 대중들과 소통해보고자 하는 목표로 지난 해 활동을 기획한 바 있음. 하지만 내부적인 내용의 부족과 소통할 다양한 수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세 차례의 내부 토론과 내부 소통 구조 개선을 진행했음. 하지만 여러 이유로 하반기에도 반차별 논의 기획을 대중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차별 문제가 이해하기 쉽게 명확해지기 힘들고 복잡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당장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차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만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논쟁들을 풍부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좀 걱정.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의 역량은 얼마나 될까.

물론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키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진 않음. 다만, 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획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도 있었는데요. 영역별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입법과 개별 차별금지법 입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특정한 차별에 더욱 집중하여 개별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음.

하지만 차별은 중첩적이거나 복합적. 차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이때 차별들 사이의 관계는 병렬적기만 한 게 아니라 인과적이기도 함.(여성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빈곤하게 되는 등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영역별로 인위적으로 나누기 힘든 경우가 많음. 영역별 차별금지법은 해당 영역의 차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집중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영역별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복합적인 차별 양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수 있는 차별 사유와 포함될 수 없는 차별 사유가 나뉠 수 있는 상황(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논란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쉬운 차별 사유를 금지하는 개별법은 쉽게 제정될 수 있는 반면 그러기 힘든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예상됨. 이런 상황에서 일반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개별법만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차별들 사이의 위계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 하나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차별을 오히려 유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별 상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음.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논란을 거친 현재의 상황에서 개별 영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성적 지향,출신국가 등과 같이 논쟁적인 차별 사유를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음.(2007년 이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제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차별금지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영역별 차별금지법보다 일반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4. 차별금지법 관련해 이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나눠볼까요?('대응하지 않는다' 포함)

- □ 법무부가 올해 차별금지법 발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경우
 - 법무부 안을 검토하며 대응(쟁점) 준비
 - 우리가 발의할 차별금지법안 준비(이전 법안 수정 보완)
 - 반차별공동행동 혹은 차별금지법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연대체 구성
 - 여러 현안 대응. 차별 관련 다양한 담론 대응 준비.
- □ 차별금지법 발의를 정부 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지 않을 경우
 -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화두로 하는 다양한 차별 담론 개발
 - 반차별(차별금지법 내용) 교육, 토론회 등 개최
 - 이외 다양한 활동
 - 우리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언제/어떻게 발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필요

위 글에서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 차별금지법 : 일반명사로서의 차별금지법. 차별 일반을 금지하기 위한 법.
- '차별금지법': 2007년 10월 법무부가 발의하려고 입법 예고했던 차별금지법안. 본래 20개의 차별사 유를 입법하겠다고 했으나 그 중 7개의 사유를 삭제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이후 고민들

● 배복주(반차별공동행동/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정운동은 장애계에서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4월 10일에 법이 공포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성과를 갖게 되었다. 장차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등을 포함하여, 교육, 고용, 문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비를 이루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이다.

장차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및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으로 인한 차별행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재활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 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차별의 영역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차별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차별시정기구는 일원화되었지만 시정권고과 시정명령은 이원화하는 형식이다.

입증책임의 부분에서도 차별행위자에게도 어느 정도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차별을 겪은 장애인들이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은 차별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장차법이 시행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들이 진정한 사건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위원회 전체 차별 진정사건 중 장애차별 진정사건 현황〉

		차 별 사 유			
구 분		계	성별, 신분, 나이, 인종 등	장애	
장차법 시행이전	진정건수	4,508	3,878	630	
(2001. 11. 25 ~ 2008. 4. 10)	비율(%)	100	86.0	14.0	
장차법시행이후	진정건수	1,058	413	645	
(2008. 4. 11 ~ 2008. 12. 31)	비율(%)	100	39.0	61.0	

출처: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2009.04.10)

장차법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사례분석을 내놓았고, 장차법 시행이후 장애인 차별 진정건수가 장차법 시행이전보다 8.3배가 증가했다고 위 표에서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황뿐만 아니라 장애영역별, 차별영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진정사례에 대한 분석자료도 함께 발표했다.

장차법 시행으로 장애인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많이 해왔으며, 그 중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건들도 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많이 이루어지는 반면 법무부 시정명령은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계는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장차법 제정운동의 성과는 장애인의 일상적이고 폭력적인 차별의 문제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장애계가 한 목소리로 투쟁했다는 점, 장애인 차별사안을 제도적으로 구조화시킨 점, 입법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 환경 변화와 대중들의 인식변화를 요구한 점 등을 실체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장차법의 법안을 살펴보면 장애유형, 차별영역 등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상징적으로 구성된 것이 많은 점과 기존의 사회법과 상충되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장애여성과 장애이동 등', '모부성권, 성'은 여전히 젠더관점의 부재와 섹슈얼리티 관점에서 보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모·부성권, 성'에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서 장애여성이 여성으로서 수행해야 할 성역할을 고정화시키고 장애인 성적자기 결정권은 성향유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공간과 도구의 마련에 대한 접근성에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성기중심의 섹스를 전제한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또 장애여성의 영역에서도 구체적인 차별에 대한 언급은 '양육'만을 다루고 있으며 '양육' 담당은 장애여성임을 전제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여전히 우생학적 이유로 장애아 출산이나 장애여성의 임신에 있어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낙태허용 논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장차법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등의 보장만큼이나 장애여성의 사회적 낙태권 역시도 포함하여 보호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성적자기결정권도 행위할 공간, 도구마련 등 성향유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개인의 성지향이나 성차별에 기인한 성적권리의 제한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법이 이성애를 기반으로 양성평등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또 다른 차별 의 영역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장차법 제정투쟁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투쟁했고 그 투쟁은 '정당'했고 대중(시민)들도 '장애인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것은 (법 내용과 조항을 생산하는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는 일이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그룹이 당연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혹은 차별받는 구조에 살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합의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다른 차별영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태도는 어떨까?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만 차별을 받는 것인가? 한 개인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차별만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중적, 다중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받는 사회적인 차별에 대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서 사회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차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성·인종차별반대 공동행동: 취지와 활동 지향

● 이대훈(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1. 배경과 문제의식

-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주자들과 체류자들에게 인종차별적 행동 및 공격이 상당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외의 영역에서도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인종주의가 은근히 그러나 강하게 확산되어 왔으나 거의 견제, 또는 비판되고 있지 않는 상황.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취약한 한국 내 지위 때문에 이러한 인종차별의 문제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단, 모든 이주자들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젠더, 연령, 출신국의 경제적 상황, 출신국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피부색,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직업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남. 이러한 차별은 한국 사회에서 민족단일성과 혈통 신화, 신분과 계급 질서, 백인-서구 숭배, 종교적 편향 등 여러 지배질서 및 문화적 징후들과 결합된 것으로, 은근한 인종주의라도 기존의 불평등 및 억압적 질서와 결합될 때 더욱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됨.
- 대책위 결성과 활동의 계기는 2009년 7월 부천의 한 버스에서 한 한국인이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과 같이 동행한 한국인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가하면서 시작된 일련의 사건.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긴밀한 결합, 상호작용을 드러낸 사건.
- 동시에 심각한 문제로 파악된 것은 경찰서에서 역시 이들이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점과 후세인씨가 대학에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우호적인 보도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한국인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에 대해서 거의 사회적 관심이나 보도가 없었다는 점(일부 '여성' 언론을 제외하고). 즉 인종화된 '비국민'과 함께 있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 아직까지 인종차별 속의 젠더 문제는 제대로 부각되지 못함. 이는 인종차별의 피해, 성차별과의 결합 정도와 심각성이 큰 반면, 이에 대한 각성이나 공론화, 경찰 등 인권관련 기관 및 언론의 의식이나 대

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

-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은 소위 '백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과 소위 '백인'과 함께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면이 새삼스레 부각되었는데, 인종차별이 소위 '노동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젠더가 개입될 때 더 공격적으로 나타난다는 면에서,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단순히 내국인의 외국인혐오 증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차별이 인종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양상으로 파악.
-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문제로 보는, 광범위하게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관념에 문제의식. 즉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백인이 비백인에게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인'들을 피해자로 상상함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눈을 감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의 결합 문제: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출신국'시민을 '열등'함과 연결시키는 차별행위에 대해, 한편으로는 계급차별과의 결합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국가의 '선진국'되기, '부자'되기 이념과 같은 '개발주의' 패러다임의 결과라는 면에서 계급차별로만 국한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도 제기됨. 즉 국가의 성격과 인종주의의 긴밀한 상관관계가 주제로 제기됨.
- '성 · 인종차별대책위'(이후 '공동행동')의 활동 목표
 - 가시화되지 않은 인종차별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를 가시화하고, 연대와 지원을 제공하며, 인종차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공유한다.
 - 토론회, 직접행동, 언론기고, 기자회견 및 다양한 활동을 인종차별 문제를 대중화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다
 - 인종주의와 계급차별 그리고 가부장제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 성·인종차별 상황을 종합 정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정례보고서 등 한국 인권상황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 외국인과 이주자를 고용·초청·상대하는 모든 기관에 성·인종차별에 대한 대책과 절차를 세우고, 이를 기관 내에 교육 등을 통해 공론화,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 시민·사회단체, 학교, 교육기관 등의 프로그램에 인종차별문제가 중요하게 포함되도록 공론화하고 협의한다.
 - 인종차별 문제를 다른 형태의 차별과 연결시켜 대응함으로써 향후 차별 방지와 관련된 법제정의 기초가 되도록 한다.

2. 성차별과 인종차별

○ 일반적으로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별개의 것으로, 인종주의는 주로 민족관념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은 성차별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사회에서 이 두 종류의 차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등에서도 이러한 결합된 차별이 드러남. '다문화'에 속한 '정상 적'인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이 계급과 가부장적 가족개념에 의해서 구분되며, 그 결과 이주노 동자가족이나, 난민가족 등이 배제됨. 난민 정책에서도 난민과 새터민이 구별되며 직접 간접적 지 원에 큰 차이가 존재. '다문화가족'이라는 명명,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결혼이주 여성을 '동화' 또 는 '적응'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 편성. 결혼 이주 남성은 문제시 되지 않음. 즉 다문화정책 영역에서도 인종과 젠더가 결합된 형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 이 를 통해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를 표준으로 강제할 가능성 등이 우려의 지점.
- 동시에 인종화된 소수집단의 차별을 젠더, 인종, 계급차별이 중첩된 이중억압, 삼중억압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함. 각 차별의 교차점과 그 교차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억압적 사회관계를 각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세 가지 차별이 동시에 단순한 합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킬 위험 때문
- 인종주의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파생으로 이해하는 것도 협소. 한국의 근대 국가와 사회 형성에 깊이 침투한 '백인/비백인'의 구분, 서구 따라잡기 발전론, 부국강병론, 보수 엘리트들의 자발적 식민주의와 같이 서구/백인 숭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과 열망, 제도 가 인종주의를 작동시키기 때문임.

3. 향후 공동행동

- ㅇ 제기하고 싶은 질문들
 -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적이면서 인종주의에 무감각한 이유는?
 -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 한국 정부와 사회는 인종주의의 심각성을 왜 외면하나?
 - 한국에서 인종주의가 드러나는 방식은? 서구와의 차이와 비슷한 점은?
 - 한국 인종주의의 지역적 국제적 연관성은?
 - 인종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 다른 주체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인종주의는 한국 사회운동에 의미가 있는가?
 - 인종화된 '발전' 패러다임, '발전', '부국강병', '과학종교' 속의 인종주의
 - 파시즘과 성차별 및 인종주의의 긴밀한 관계
 - 전쟁과 국가폭력에서 폭력의 '인종화'
- O 성·인종차별 발현 방식의 범주화
 -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 조건부 차별/ 위장된 차별/ 공간의 인종화
 - 법제도상의 차별
 - 성·인종차별 범죄의 경계
 - 반공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 언어에서 '외국인'. '아시아인'. '동양인' 하프코리언. '혼혈인'을 명명하는 방식
 - 선악의 성차별·인종화: '파란 눈의 천사'
 - 베트남전 참전과 기억. 기념에서의 젠더화된 인종주의

4. 차별금지법 관련

- 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국제인권기준에 합당하며 엄격하고 포괄적인 '차별' 규정이 필요함. 단, 기존의 차별금지법안 논의에 네 가지 점이 추가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1)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몇몇 우연한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교육된 것이며, 문화적인 동시에 국가와 종교 등 지배적 기관들의 운용에 나타나는 편향에 의해 크게 고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즉 인종차별에 관한 법률적 개념화와 규정이 차별금지법에서 더 분명하고 세부적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
 - (2) 인종차별은 다른 차별 영역과 일정하게 다르게 소위 '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에 관련된, 즉 국제적 성격('식민성'의 한 징후로서)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동시에 성차별 계급차별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나타남. 이 '식민성'과 차별의 '결합'을 어떻게 제도로 표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3) 인종차별철폐협약과 더반 선언(2001)등에서 정식화된 인종차별의 확대된 규정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라는, 각기 표현이 상이하지만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광의의 '인종 차별'을 수용하고 그에 맞게 법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4) 또한 더반 선언 등에서 강조한 인종차별과 사회적 평등 및 자유도의 긴밀한 상호관계에 대한 언급이 기존 차별금지법제 논의에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불균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조건이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을 발생시킨다"은 중요한 원인 진단과 구제방법을 법제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영역별 개별 차별금지법의 추진에 대해서는, 시간의 선후에 대해 고정된 원칙을 만드는 것보다 다음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1) 포괄적 차별금지법제 대한 시민사회의 원칙과 입장 및 매우 구체적인 원인진단과 구제방법 관련 항목을 포괄적으로 담음 일종의 '차별금지헌장'으로 정식화하고.
 - (2)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포괄적 법제와 매우 구체적인 항목으로 잘 짜여진 개별 차별 금지 법제의 추진을 선후를 가리지 않고 해당 사회적 역량과 여론의 상황에 맞게 추진하도록 함.

차별금지법 제정, 반차별 운동은 실천과 연대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 1. 차별금지법과 같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우려를 짚어본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차별 운동에 미칠 영향)
 -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 용역 등의 공급, 이용 상의 차별, 교육기관 내용 및 목표 등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제하고 보편적 평등을 법으로 보호, 규제한다는 기본법적인 성격이 있기에 제정되어야 한다.
 - 공적 영역 이외 사적 영역을 포괄하는 법안을 만들 것인지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함.
 -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으로는 한계가 분명 함.
 - 법을 통한 차별의 규제는 분명한 한계(법의 테두리 이외의 영역에 대한 보호 등)가 있으나 법 제정의 과정과 여러 운동에 미칠 영향 및 성과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중요함
- 2.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의미(와 우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차별금지법 입법 등의 과정에 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입법 운동과 반 차별운동과의 관계)
 - 지난 정부입법 차별금지법 대응 활동을 통해 드러났듯이 정치, 경제를 포함해 일부 보수 종교 세력의 공격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반차별 운동이 거리에 나설 때 부딪힐 수밖에 없 고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이 될 것임.
 - 반차별 운동,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대중적 지지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 그리고 실천이 오히려 중요한 지점이 되어야 하며. 연대의 폭을 넓히는 과정으로 가야함.
 -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운동진영의 관점은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함.

3. 차별금지법 관련해 이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나눠볼까요?

-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1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단체의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그 첫 단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차별금지법의 의미, 제정의 의미, 목표, 대응 논리, 설득, 실천, 광범위한 실질적인(지지, 지원, 실천, 인원 등) 연대를 만들어야 함.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의미 있게 바라보아야 할 측면이 있음.
 - : 흔히 국회 로비로만 설명되는 입법운동과는 다르게 공청회, 설명회, 지역 추진위 결성, 결의 대회, 국토순례, 기자회견, 서명운동, 점거, 집회 등의 과정을 통해 이동권, 교육, 생활보조인 등 여러 파생되는 운동의 성장과 함께 장애 대중의 적극적인 실천은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적인 장애 대중의 투쟁으로 끌어낸 점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반차별 운동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바라보아야 함.

2007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투쟁에서 성소수자들은 물러섬 없이 싸웠다. 원안에서 삭제된 성적지향을 비롯한 여러 조항들의 복원을 외쳤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향해 거리의 시민들을 향해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며 더 이상 차별반대의 목소리를 모아 외쳤다. 동성애자인권연대도 이 중요한 순간에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10년이 넘은 한국 사회 성소수자 운동의 역사에서 2007년은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다. 그 이후 촛불의 물결에서도 자신감 있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고 성소수자 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상시적인 연대체인 무지개행동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성소수자들의 투쟁 활동은 반차별공동행동이라는 연대체 결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반차별공동행동에서 2008년 3월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법 제정이 담는 의미가 입법 운동에 대한 의미로 귀결되어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판단으로 흘러간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입법 운동은 과정부터 결과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운동 진영들의 입법 운동을 평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여러 운동 진영들이 폭넓게 논의하는 공간에서 열리고 토론되어지길 희망한다. 반차별공동행동이 지금까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차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논의하고 여러 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운동을 지속해 왔다는 점은 큰 성과라 생각된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201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활동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의미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에 대해 연대의 폭을 넓히며 저항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차별을 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개인, 집단은 없다. 하지만 차별은 현실에서 엄연히 존재한다. 장애인, 성소수자들에게는 정상, 비정상의 논리를 들이대며 배제하고 있고 고용에 있어서는 비정규, 계약직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있으며 작업 수행 능력에 따라 배제, 차별,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범주를 세분화시키며 차별은 물론 부당한 감시와 통제의 끝을 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치, 경제적 기득권 세력들도 자유, 평등,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기업 자율 경영, 평등 만능주의 등' 웃어넘길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제 이러한 말들이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전 차별금지법 대응 운동을 통해 보았고 '법이 과연 필요한가?'하며 본질을 희석시키는 모습도 보았다. 법이 필요한 사람들과법 제정을 막으려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의 문제도 남아있으며, 평등, 인권, 차별 등 의미가 모호한 개념들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며 공적인 논의를 준비해야한다.

성소수자들은 교육, 노동에서 없는 존재인 것처럼 되어있고, 군 형법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혀있다. 청소년 성소수자, HIV/AIDS 문제는 정상, 비정상, 도덕, 문란이란 잣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공격을 받고 있다. 법과 제도의 한계는 분명하나 그 한계 안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아야 하기에 차별금지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도 많다.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포함해 흔히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지는 결혼 유무로 인한 (고용, 노동 등) 차별, 주거에 대한 차별, 금융(보험, 연금을 포함한 계약 및 수혜)제도에서의 차별,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들까지 담는 법안이라면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고 연대의 세력을 넓히며 실천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법안 제정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들은 많지만 실천과 연대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필요성의 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법안 제정의 과정은 몇몇 활동조직, 서울 중심의 운동을 벗어나야 한다. 개별법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차별이란 단어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억울하고 분한 경험을 전국적으로 들으며 장애 인권의 가치를 최대치로 설정하며 차별의 문제를 깊게발견하고 이를 구조화 세분화 시키며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며 차이를 넘어선 다양한 조직들이 평등하게 결합하고 내용을 채우며 토론, 논쟁을 이어갔다. 물론 대중적인 다양한 실천도 병행되었다. 정치, 경제계와의 싸움, 전국적인 실천, 대중적 설득논리 개발 등 여러 활동을 포함해 법 제정을 지지하는 법률가, 시민사회, 인권의 영역에서도 토론과 논쟁 그리고 설득을 이어왔다. 기나긴 7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긴장하며 투쟁하며 설득하며 싸우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되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앞선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새롭게 재구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밟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운동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분했던 경험, 현실을 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고 법안을 만들어 쉽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며 대응 논리를 만들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여러 운동을 만들고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 법의 필요성과 반차별 의식을 확산 시킨다면 제정 운동은 입법 운동만이 아닌 반차별 운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장한 반차별 운동은 새로운 과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후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올해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작년 유엔 사회권위 원회에서의 정부 답변에도 법 제정을 위한 TF를 만들겠다(만들었다?)는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투명 하고 실천적이며 도덕적인 정부라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공개하고 조언을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이 먼저 진행되었어야 했다. 아마 현 정부의 차별금지법은 듣기도 받기도 싫은 립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 오해도 풀고 긴장을 나누며 의미 있는 논쟁과 토론을 이어갔다. 상처는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감싸지고 치유되며 긴장은 앞으로의 계획, 결의를 다 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 반차별 운동을 이어가는 과정은 큰 긴장과 결의 그리고 쉼 없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우려와 기대 그리고 두려움과 설레임도 있다. 앞으로의 과정은 그동안 경험했던 혹은 들어왔던 운동의 경험과는 다른 큰 결단과 기나긴 시간이 필 요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차별 받으며 숨죽이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말자는 게 아니라 잘해보자는 거지

● 신기루 (반차별공동행동/한국여성민우회)

1.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 대응 및 반차별 운동

- 민우회는 2007년 이후 반차별 공동행동에 연대해 왔고 '여성'운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은 이 연대의 경험을 통해 보다 확장되었다. 민우회 내 반차별 운동은 (멀리는 평등이력서, 가족차별 없애기 등에서 시작하지만 3년 활동한 개인적인 경험의 한계로) 2007년 7개 조항이 삭제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활동부터, 2008년 민우회 사업목표 1.로 반차별 사업을 인준, 건강, 노동, 복지 등 각 이슈를 '반차별'을 키워드로 연결 다시 읽는 작업과 나이차별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대응하는 등 '여성'당사자성을 넘나드는 활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운동의 주체가 없는 운동, 예를 들어 나이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인 '내 나이 묻지 마세요'는 '여성' 또는 '성차별'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것이었고 반차별 운동을 주요 이슈로 설정하는 속에서 여성운동의 동력을 새로이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민우회의 반차별 활동은 '차별'을 언어화하고 사회적 담론을 풍부히 하고자한 담론대응 운동, 개별사유에 갇혀 운동했던 것에서 서로의 운동을 배우고자한 반차별공동행동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
- 2007년 당시 '차별금지법' 사안은 가장 부각되고 이슈화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7개 사유 삭제와 함께 재계, 보수기독교계의 뚜렷한 혐오감을 확인한 계기였다.
 - 재계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국가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 보수기독교계 :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다른 차별금지대상과 동등한 동성애를 정 상으로 공인하게 된다. 동성애가 사회에 확산되면 결혼률 감소, 저출산, 에이즈 확산 등 사회병 리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토록 노골적인 혐오감을 만난 적이 있던가? 우리사회의 소수자 차별과 '대중'의 고정관념은 수 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2007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혐오감과 저항감을 수면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법 자체 보다는 법이 만들어낸 국면이 그만큼 위력적이었다. <u>아무도 문제제기가 없고</u> 그것이 왜 차별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상황은 가시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그러

<u>나 기나긴 담론대응 속에서 이슈는 잠식당했고 정부와 국가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의지대로</u> 차별금지법은 등장했다 잠복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2. 차별금지법 제정과 입법 운동의 의미

- 달라진 지형에 서자
- 내적인 역량을 쌓는 것은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목표이다. '차별'을 개념화, 언어화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완성됐을 때 반차별 운동은 어디에 있을까? 있을 자리가 있을까? <u>국가 주도적인 법안 제</u> 정활동에서 국가가 법안을 발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활동방향을 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동적 이다. 주장이 아닌 반대를 외치게 될 때 '며느리가 남자라니!'라는 슬로건에 대해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황은 반복될 수도 있다.
- 반차별공동행동은 물리적 입법운동의 한계 및 법제정활동이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를 간과하지 않았다. 법제정과 동시에 법 언어에 의해 포함, 배제되는 차별과 정체성, 법제정을 위한 매뉴얼화된활동 속에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는 문제에 신중했다.

그러나 비이성애자, 비정규직, 비장애인은 법 언어에 구겨넣든 사회적 통념에 구겨넣든 사회적으로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때 언어의 빈곤과 정체성의 기만에 봉착한다. 법 언어와 사회적 통념은 정상규범에 기반해 있고 결국 법 언어와 사회적 통념의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닌 하나의 기원이며, 운동이 문제제기할 영역 또한 한 곳 이다. <u>법제정이냐, 담론대응이냐의 문제설정은 유효하지</u> 않으며 그야말로 담론의 영역에서 개념적 구조물일 뿐일 수도 있다.

반차별 공동행동이 법제정활동에 대해서 신중했다면, 담론적 기반 없이 법이 존재할 때의 문제에 우려를 표시한 것인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자체에 반대한 것이었나?

○ 인종차별 이라는 새로운 차별문제가 부각되었다. 연령차별금지법이 국가에 의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고 사유 삭제나 선별 등의 과정에서 운동단위는 소외되어 있으며 동의여부를 묻는 권위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 바뀐 정권아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보다 능동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과거 법제정활동에서의 쟁점은 입법운동에서 법제정을 핵심으로 둘 것인지, 시민사회 안에서 의제화하고 논쟁점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인지였다. 이러한 분리는 달라진 지형에서 소모적이다. 궁극적으로 법제정을 목표로 하되 시민사회 안에서의 의제화는 법제정의 목표 하에서 동일한 활동의 연장이다. 입법운동의 의미를 사회적 인식들을 재규정하는 문제로 보고, 현실의 변화를 추동하는 법, 누구도 삭제를 감행할 수 없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재의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 반차별공동행동(내 민우회)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안, 기획하는 주체가 되 기를 욕망한다. 활동의 방향을 명확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으로 가져가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상황에 공동으로 예비하고 반차별 운동에 있어 의미를 확인하고, 공동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뀐 정권 아래서 '<u>입법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차별금지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되 대사회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쟁점이다.</u> 차별금지법을 우리 스스로 추동하고 발언할 만큼 대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만한 우리의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법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 릴레이 워크샵, 상상더하기와 웹진, 차별담론 팀 활동을 통해 고민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 성희롱 법제화과정은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일상을 문제화시켰다. 법이 현실을 재구성했고 피해자화, 법의 오독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개입 등 부수적인 운동과제 또한 생산했지 만 그 영역에서 또 활발히 움직였다. 차별금지법은 운동단위를 주체로, 7개 사유 삭제 반대를 외치고 열정적으로 결합하였던 당사자, 운동단체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발의권한은 법무부에 있지만, 무엇이 법이라는 공적담론의 핵심이 돼야하는지 반차별 공동행동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한국여성민우회 2010년 사업계획〉

1. 반차별 회원실천 연속캠페인 1 '여자, 여자 사랑해요'

- 연속 반차별 캠페인 1탄, '여자, 여자 사랑해요'(가)를 통해 성적지향,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반차별 감수성을 고양
-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여성이 지지하고 힘주는 사회를 만들기를 위한 회 원 실천 캠페인을 진행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 반차별 공동행동 연대를 통해 각 운동의 장점을 살려, 반차별 운동의 의미와 지향성을 보다 확장시킨다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반차별 담론을 확산,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차별금지법 대응: 2007년 이후 반차별운동을 전망하는 속에서 법무부 등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응하고, 삭제 없는 포괄적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산하는 활동을 펼침.

3. '내 안의 차별 세포 박멸' 활동

- 우리 안의 피부색, 언어, 가난, 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증을 드러내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